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신규사업	중앙정부 지원	재정적·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비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정상추진(81%)
주관부서	미래혁신전략과	협업부서	일자리경제과
공약실명제	과장 윤상영(6350), 팀장 박성준(6741), 담당자 민언철(6483)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여부 점검 및 관리
- 기관별 단순노무자 등 비정규직도 지역 주민 채용 독려

○ 대 상 : 김천혁신도시 4개 이전공공기관

○ 주요내용

-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여부 점검
 - 이전공공기관이 매년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대한 내용 검토협의 및 촉진 요청
 -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국토부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므로 계획의 실천여부 확인점검
- 김천지역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인재의 취업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일자리창출(인재양성)분과를 통한 시책 추진
 - ☞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을 통해 김천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취업 유도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촉진 및 지역인재양성 시책 추진 경북도 건의

□ 추진실적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기 관 명	2018년			2019년			비고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계	320	68	21.2	382	93	24.3	김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206	41	19.9	190	43	22.6	
한국전력기술	31	10	32.3	54	16	29.6	
한국교통 안전공단	83	17	20.5	120	30	25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	-	-	18	4	22.2	

※ 그 외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으로 공개채용시험에 의해 선발하여 통계에서 제외

※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 '18(18%), '19(21%), '20(24%), '21(27%), '22(30%)

○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일자리창출분과를 통한 「2019년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 참여

- 일 시 : 2019. 11. 11.(월) 14:00 ~

- 장 소 : 김천종합스포츠타운

- 내 용 : 지역인재채용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채용상담부스 운영

☞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접컨설팅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18%) 준수 점검 - 김천상생드림밸리협업체 일자리창출(인재양성) 분과 운영 시작 및 과제 발굴	
2019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21%) 준수 점검 - 11월 중 2019년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전공공기관 면접컨설팅 부스 운영	
2020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24%) 준수 점검 -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국토부 주최) 개최 시 홈페이지 및 밴드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2021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27%) 준수 점검 -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시 부대행사로 공공기관 합동 채용상담부스 운영	
2022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30%) 준수 점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이전공공기관 13개 중 정부기관을 제외하면 지역인재채용 의무적용 대상은 4개에 불과하며, 지사·지역 본부 및 직렬별 소규모 채용 제외 등 예외 조항이 많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법 규정상 이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음
 -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차원에서, 혁신도시 기관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법 예외 규정 개정 대정부 건의 계획
-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김천 지역 인재로 한정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채용 설명회 개최 불가
 - ⇒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국토부 주최) 개최 시 홈페이지 및 밴드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 기대효과

- 양질의 일자리인 이전공공기관에 지역 인재채용 확대
- 기관 인재채용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취업기회 부여 및 일자리 창출